

#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지원 안내

## 1. 전국 회원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해설

### 목적

-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
-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

### 추진방향

- 농어업인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
-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

### 근거법령
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

제31조 (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) 국가는 농어민이 [국민연금법]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

제16조 (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)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3조 제2항

제3조 (계정의 구분) 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,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.

-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

제5조 (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)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

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 10조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.

### 지원대상자

-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
-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

### 농업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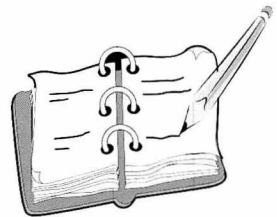
-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-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
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
### 제외대상자

- 농,림, 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
- 사업등록자 다만, 각목중 하나만 해당되면 제외
  - 간이 과세자
  -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

### 신청요령

- 신청자 : 농어업인이 신청
- 신청방법 : 붙임의 '국민연금농어업인확인서' 에 작성하여
  - \* 1차 확인 : 거주지 또는 사업지 이장, 통장에게 확인
  - \* 2차 확인 : 거주지 또는 사업지관할 시, 구청장 또는 읍,면장
- 관할 시, 구청장 또는 읍,면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제출



## 2. 전국 회원의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해설

### 목적

-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,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

-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
-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

### 시책 및 추진방향

-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
-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(주민등록 기준)
  - \* 농어촌 지역 :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, 면, 시의 동지역 중 주거, 상업,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  - \* 준농어촌지역

### 농지법에 의한 진흥지역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지역,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

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(다만,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한함)

- 농업, 축산업, 임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50% 이내에 국고지원(농림부 28%, 보건복지부 22%)

### 근거 법령
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
-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
-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3조 제2항
-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



## 추진계획

2006년 599천 세대 1,358억원 → 2007년 532천 세대 1,271억원

## 신청요령

- 해당 회원의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차로 거주지 이, 통장의 확인을 받고, 읍, 면, 동사무소별 농정업무담당자에게 2차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

## 제외 대상

-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50%를 이미 경감받고 있는 농업인
- 농어촌 및 준농어촌(읍,면,동)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**중**

[별지 제19호의2서식] <신선2006.3.23>

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		처리기관 주소
농어업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전화번호	휴대전화
농어업인 해당일	년	월 일
농어업인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인(축사,임업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어업인
년간 판매액	원	
년간 종사일 수	월	
농어업 규모	농지 어선 양식	m <sup>2</sup> 톤 ha
상기인이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47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시명 또는 인)		
이장, 통장 확인	이장/통장	
상기인이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시장/구청장/읍장/면장		
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		

210mm×297mm(인쇄용지)

60g/m<sup>2</sup>

[별지 제1호 서식]

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							
신	성명	주민등록번호	세대주의관계	전화번호			
청	주소	시도	구	읍면동	리	마을	번지
인	종사직종	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		영농(어)규모 - 있는 경우 생략 가능	농지 어선 양식	ha ha ha	
	농수산물 연간판매액	원	영농(어) 종사일수	년 월 일			
신청인 성명 : (인 또는 시명) 위 의 자는: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동(리) 통(어)장 성명 : (인 또는 시명) 확인자(장명)							
농 어 업 인 확 인	1 차 확인 (1) 주민등록번호(인치, 불일치) (2) 주소, 동차관리지역 거주(인치, 불일치) (특,광역시 제외) (3) 주소 및 준농어촌(농업진흥지역,개발제한구역) 거주(인치, 불일치) (4) 주소 및 준농어촌(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) -제1종 전용주거지역 거주 -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주 (일치 불일치) -자연녹지지역 거주 -자연녹지지역 거주 ※ 4개 예시 중 1개만 일치하면 일치로 하 인 -농어업인 거주지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 존치 여부(존치, 비존치) (5) 주소 및 농어촌 거주(인치, 불일치) (6) 농어업 종사여부(인치, 불일치)						
	2 차 확인 상기와 같이 농어업인으로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시(군·구) 읍(면·동)장 (인)						

\*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, 농어업인 실려진 필장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,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인 210mm × 297mm

<문 면>

기 제 요 령
1.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나(동)장에게 사실확인(1차)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·면·동에 신고(2차 확인)하여야 합니다. 2. 농어업인이 아니면서 추가경감을 받은 경우는 추가경감분을 소급하여 정수하게 됩니다.
<b>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</b>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(읍·면·동)에 거주(주민등록 기준)하는 농어업인
<b>◇ 농업인</b> 1)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(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) 2)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)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* 축산업 범위도 농업인 2), 3)기준에 준함.
<b>◇ 임업인</b> 1)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)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)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
<b>◇ 어업인</b> 1)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)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(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농수산물 포획·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)

210mm × 297mm